

## 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

제정 2011. 1. 1.  
 개정 2012. 1. 1.  
 개정 2013. 8.19.  
 개정 2016. 3. 1.  
 개정 2017. 3. 1.  
 개정 2018. 3. 1.  
 개정 2020. 4.20.  
 개정 2020.11.23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,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.

③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제 2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직원: 본교 교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3인을 위촉한다.

2. 학생: 총학생회 혹은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3인을 위촉한다.

3. 관련 전문가: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항제4항 각호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로 총장이 1인을 위촉한다.

⑤ 제 2항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⑥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⑦ 위원회의 가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해당연도 적정 등록금 산정

2.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·결산 심의

3. 기타 등록금 산정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4조(회의 및 의결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괄한다. 단,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, 또는 재적위원 1/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.

③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

다.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1주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등록금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대학 홈페이지에도 공지한다.

**제5조(회의록)** ①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. 다만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2.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

4.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,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

②회의록은 회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

**제6조(기타)**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